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나413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대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2227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C은 화성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2.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회(2020. 2. 29., 2020. 4. 29., 2020. 5. 31., 2020. 6. 29., 2020. 7. 29., 2020. 8. 31.)에게 걸쳐 C에게 합계 60,940,000원 상당의 금형제품을 납품하였다.

2) 원고는 2021. 5. 17.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차전2602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6. 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6. 10. C에게 송달되어 2021. 6.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군포시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형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18. 3. 8.경부터 2020. 3. 30.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금형부품 가공의뢰를 받아 이를 납품하였다.

2) C은 2020. 4. 24. 피고에게 “2020. 3. 31.자로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115,218,650원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채권 1억 2,000만 원을 받는 즉시 피고에게 최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20. 6. 24.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776호로 위 물품대금 채권 중 104,19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지급명령은 같은 해 7. 2.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0. 6. 25.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신용조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J로부터 C에 대한 채권 중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C은 2020. 7. 13. 피고에게, “C이 2020. 6. 2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1), 이를 같은 해 7.부터 2021. 4.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변제하며,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C이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550658호로 C이 K(일본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K는 2020. 12. 15. 피고에게 C에 대한 채무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C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20. 12. 16. J에게 추심수수료(직접 변제)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무자력

C은 2020. 7. 13.경 적극재산으로 자신 명의로 약 6,3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M건물 N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O에 대하여 32,755,000원, P에 대하여 20,179,138원, Q에 대하여 17,600,000원, R에 대하여 38,359,08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등 은행권에 대하여 합계 180,894,93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47,470,23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8. 3.부터 2020. 3.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보다 먼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종전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감액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서의 채권은 종전 물품대금 채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채권보다 이전에 성립한 피고의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생기게 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2020. 2.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회에 걸쳐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인 사실, 원고의 채권 중 2020. 6. 29., 2020. 7. 29., 2020. 8. 31.에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의 성립시기가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일인 2020. 6. 25. 이후에 성립한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갑 제7 내지 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주문을 받아 금형제품 제작 후 납품하였고, 2020. 6. 25.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채권들도 납품 이전에 C의 주문과 지시로 상당 정도 작업이 이루어졌거나 이전에 납품한 제품들을 재가공하여 납품한 물품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체결 무렵 이미 성립되었거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성립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 1)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4. 24. 피고에게 I로부터 미수금을 받게 되면 최우선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는 J가 추심한 C의 채권 중 1,000만 원을 2020. 6. 26.에 수령하였으며, C은 2020. 7. 13.에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상의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C의 K와 L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12. 15.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3) C이 무자력상태에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C의 K 및 L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K로부터 채권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4)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K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2020. 3. 3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15,218,6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체결 전인 2020. 4. 24.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를 확인하면서 I로부터 변제받는 즉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원고는, C의 위 확인서 작성행위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확인과 상환약속에 불과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② 피고가 2020. 6. 24.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같은 해 7. 2. C에게 도달한 사실, ③ 피고는 2020. 7. 13.에 C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 ④ C이 피고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위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종전 채무를 감액하는 내용인 점, ⑥ 피고가 J를 통하여 C에 대한 채권 중 1,000만 원을 수령한 것과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은 피고와 J 사이의 2020. 6. 25.자 채권추심/신용조사 위임계약에 따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이승원, 판사 이주현

1) 원고는, C과 피고가 2020. 7. 13. 1억 원의 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20. 6. 25.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